

경영공시자료

2023 상반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경영 현황

기간 : 2023.1.1-2023.6.30

-보험업 감독규정 제 7-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2023.09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국지점

[목 차]

제 1 장	주요 경영현황 요약
제 2 장	재무·손익
제 3 장	자산의 건전성
제 4 장	자본의 적정성
제 5 장	수익성
제 6 장	위험관리
제 7 장	기타 일반현황
제 8 장	재무제표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해당 분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재무·손익	자산	11,210	11,074	136.00
	부채	5,513	5,784	(271.00)
	자본	5,697	5,290	407.00
	당기순이익	199	407	(208.00)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297.01	-	297.01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297.01	-	297.01
수익성 비율	운용자산이익률(A/B)	1.84	1.36	0.48
	영업이익률	9.38	7.24	2.14
	총자산수익률(ROA)	7.43	15.94	(8.51)
	자기자본수익률(ROE)	19.64	45.03	(25.39)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당사는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IFRS17/9 기준), 전년동기대비 총자산 136억 증가하였으며, 이는 운용자산 562억 증가, 비운용자산 426억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기타부채 202억 감소, 책임준비금 68억원의 감소로 인해 총부채 27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2.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 %p)

구 분		해당 분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신계약률		126.00	60.00	66.00
효력상실 및 해약률		8.00	7.00	1.00
보험금지급률		37.71	37.39	0.32
자산운용률		59.40	55.00	4.40
유지율	13회차	63.76	63.83	(0.07)
	25회차	49.66	49.80	(0.14)
	37회차	43.60	48.32	(4.72)
	49회차	43.20	45.19	(1.99)
	61회차	40.10	39.68	0.42
	73회차	35.30	34.01	1.29
	85회차	27.26	25.35	1.90

* 주요변동요인 : 2023년 여행자보험의 가입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신계약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효력상실 및 해약률'과 '유지율'의 경우 장기보험종목에 대한 지표임

II. 재무·손익

2-1.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총괄)

(단위: 억원)

구 분	해당 분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보험손익	212	492	(280)
보험부문			
(보험수익)	3,115	3,023	92
(보험서비스비용)	2,523	1,948	575
(재보험수익)	516	280	236
(재보험서비스비용)	830	805	25
(기타사업비용)	65	59	6
투자손익	40	63	(23)
투자부문			
(투자수익)	146	188	(42)
(투자비용)	106	125	(19)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252	555	(303)
영업외손익	1	(23)	24
영업외부문			
(영업외수익)	32	1,233	(1,201)
(영업외비용)	31	1,257	(1,22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253	531	(278)
법인세비용	54	124	(70)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199	407	(208)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IFRS17/9 기준)

전년동기 대비 보험손익 280억 감소, 투자손익 23억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208억 감소 하였습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I. 재무·손익

2-2. 요약 재무상태표(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해당 분기 (23.2Q)		전년 동기 (22.2Q)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	현금및예치금	711	6.34	415	3.7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0.00	-	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5,945	53.03	5,678	51.27
	상각후 원가측정 유가증권	-	0.00	-	0.00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	0.00	-	0.00
	대출채권	2	0.02	2	0.02
	부동산	-	0.00	-	0.00
	비운용자산	4,466	39.84	4,971	44.89
	기타자산	86	0.77	7	0.07
	특별계정자산	-	0.00	-	0.00
자산총계		11,210	100.00	11,074	100.00
부채	책임준비금	3,910	70.91	3,978	68.78
	계약자지분조정	-	0.00	-	0.00
	기타부채	1,604	29.09	1,806	31.22
	특별계정부채	-	0.00	-	0.00
부채총계		5,513	100.00	5,784	100.00
자본	자본총계	5,697	100.00	5,290	10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210	100.00	11,074	100.00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IFRS17/9 기준), 전년동기대비 총자산 137억 증가하였으며, 이는 운용자산 563억 증가, 비운용자산 426억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책임준비금 68억 감소, 기타부채 202억 감소로 인하여 총부채 27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Ⅲ. 자산의 건전성

3-1. 자산건전성(부실자산비율)

(단위: 억원, %, %p)

구 분	해당 분기 (23.2Q)	전년 동기 (22.2Q)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5	16	(11)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5,973	6,011	(38)
비율(A/B)	0.08	0.27	(0.19)

* 주요변동요인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중 고정이하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3-2.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가액 ¹⁾	평가손익	
일반계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A)	주식		
		출자금		
		채권		
		수익증권		
		외화표시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B)	주식		
		출자금		
		채권	3,813	(124)
		수익증권		
		외화표시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C)	채권		
		수익증권		
		외화표시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D)	주식		
		출자금		
		기타		
소계(A+B+C+D)		3,813	(124)	
특별계정	주식			
	채권	2,132	(55)	
	수익증권			
	외화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소계	2,132	(55)	
합계		5,945	(179)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IV. 자본의 적정성

4-1. B/S상 자기자본

BS상 자기자본의 주요 변동 요인은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감이며, 그리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분기별 채권금리 변동에 따른 평가액 증감입니다.

(단위: 억원)

구 분	당분기 (23.2Q)	당분기-1분기 (23.1Q)	당분기-2분기 (22.4Q)
자본총계	5,697	5,648	2,422
자본금	311	311	311
자본잉여금	-	-	-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5,813	5,688	2,342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27)	(351)	(230)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22년까지 IFRS4/IAS39 기준, '23년부터 IFRS17/9 기준)

IV. 자본의 적정성

4-2. 지급여력비율

4-2-1.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RBC)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의 세부기준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당분기 RBC 비율은 전분기 대비 6.99%p 증가한 297.01%이며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감소가 지급여력비율 증가의 주요인입니다.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2Q)	당분기-1분기 (23.1Q)	당분기-2분기 (22.4Q)
지급여력비율	297.01	290.02	-
지급여력금액	6,165	6,189	-
지급여력기준금액	2,076	2,134	-

* 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비율임

4-2-2.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세부]

K-ICS 제도 도입에 따라 급격한 재무 충격을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제도를 원만히 준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당사는 선택적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2Q)	당분기-1분기 (23.1Q)	당분기-2분기 (22.4Q)
가. 지급여력금액 (기본자본 + 보완자본)	6,165	6,189	-
기본자본 ^{주2)}	5,513	5,437	-
보완자본	652	753	-
I.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 (1+2+3+4+5+6)	6,165	6,189	-
1. 보통주	311	311	-
2.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0	0	-
3. 이익잉여금	5,813	5,688	-
4. 자본조정	0	0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27	-351	-
6. 조정준비금	469	542	-
II.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항목	0	0	-
III.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652	753	-
나. 지급여력기준금액 (I - II + III)	2,076	2,134	-
I. 기본요구자본	2,679	2,754	-
- 분산효과 : (1+2+3+4+5) - I	735	749	-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2,227	2,292	-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617	605	-
3. 시장위험액	262	294	-
4. 신용위험액	50	51	-
5. 운영위험액	258	260	-
II. 법인세조정액	603	620	-
III. 기타 요구자본(1+2+3)	0	0	-
1.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0	0	-
2.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대응치	0	0	-
3.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0	0	-
다. 지급여력비율 : 가 ÷ 나 × 100	297.01	290.02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사항]

(1) 공통적용 경과조치 관련

(단위: 억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97.01	297.01
지급여력금액	616,539	616,539
기본자본	551,336	551,336
보완자본	65,203	65,203
보완자본 한도 적용 전	65,203	65,203
보완자본 한도	103,792	103,792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	65,203	65,203
(기발행 신종자본증권)	-	
(기발행 후순위채무)	-	
지급여력기준금액	207,584	207,584

(2) 선택적용 경과조치 관련

①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97.01	
지급여력금액	616,539	
기본자본	551,336	
보완자본	65,203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적용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207,584	

* 당사는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②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97.01	
지급여력금액	616,539	
기본자본	551,336	
보완자본	65,203	
지급여력기준금액	207,584	
기본요구자본	267,880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222,663	
사망위험	6,039	
장수위험	-	
장해·질병위험	58,175	
장기재물·기타위험	573	
해지위험	162,049	
사업비위험	62,189	
대재해위험	12,341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61,675	
보험가격 및 준비금 위험	61,506	
대재해 위험	664	
시장위험액	26,207	
신용위험액	5,023	
운영위험액	25,805	
법인세조정액	60,296	
기타요구자본	-	

* 당사는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③ 주식위험 경과조치 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97.01	
지급여력금액	616,539	
기본자본	551,336	
보완자본	65,203	
지급여력기준금액	207,584	
기본요구자본	267,880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222,663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61,675	
시장위험액	26,207	
금리위험	24,723	
주식위험	-	
부동산위험	-	
외환위험	4,488	
자산집중위험	-	
신용위험액	5,023	
운영위험액	25,805	
법인세조정액	60,296	
기타요구자본	-	

* 당사는 주식위험(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4-2-3.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요 변동 요인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3.2Q)	직전년도 결산 (22.4Q)	전전년도 결산 (21.4Q)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	297.01	—	—
	지급여력금액	6,165	—	—
	지급여력기준금액	2,076	—	—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당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V. 수익성

5. 수익성

(단위: 억원, %, %p)

구 분	해당 분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감
투자이익(A)	117	75	42
경과운용자산(B)	6,318	5,516	802
(1) 운용자산이익률(A/B)	1.84	1.36	0.48
(2) 영업이익률	9.38	7.24	2.14
(3) 총자산이익률(ROA)	7.43	15.94	(8.51)
(4) 자기자본 수익률(ROE)	19.64	45.03	(25.39)

* 주요변동요인 : 경과운용자산 대비 투자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운용자산이익률이 상승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인하여 총자산이익률 및 자기자본 수익률이 하락 하였습니다.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Q,2Q (IFRS17/9 기준), 22.4Q ~ 22.3Q (IFRS4/IAS39), 22.1Q,2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VI. 위험관리

6-1. 비례성원칙 적용현황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요구자본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음.

6-2.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이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애·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장수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감소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장애·질병위험”은 피보험자의 장애 및 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장기재물·기타위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기타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해지위험”은 계약상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적권리 행사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사업비위험”은 보험계약 비용과 관련하여 장래 비용의 수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변동으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대재해위험”은 사망위험 등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현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 이외]

			(단위: 백만원, %)		
구분			I. 생명보험	II. 장기손해보험	III. 총계
당기 (2023.2Q)	충격전 평가금액	측정대상자산		-149,588	-149,588
		측정대상부채		-550,069	-550,069
	충격후 평가금액	사망위험		6,039	6,039
		장수위험		0	0
		장애·질병위험		58,175	58,175
		장기재물·기타위험		573	573
		해지위험		162,049	162,049
		사업비위험		62,189	62,189
직전 반기 (2022.4Q)	충격전 평가금액	측정대상자산	-	-	-
		측정대상부채	-	-	-
	충격후 평가금액	사망위험	-	-	-
		장수위험	-	-	-
		장애·질병위험	-	-	-
		장기재물·기타위험	-	-	-
		해지위험	-	-	-
		사업비위험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I. 전염병위험액	8,608,913	8,609	-	-
1. 생명보험	0	0	-	-
2. 장기손해보험	8,608,913	8,609	-	-
II. 대형사고위험액	119,589,288	8,842	-	-
1. 생명보험	0	0	-	-
2. 장기손해보험	119,589,288	8,842	-	-
III. 총계	128,198,201	12,341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분기마다 신뢰수준 99.5% 기준 표준모형(지급여력제도)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제도에서는 ①사망위험, ②장수위험, ③장해질병위험, ④장기재물 기타위험, ⑤해지위험, ⑥사업비위험, ⑦대재해위험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하위위험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그 위험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 1회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한도 준수 여부, 예상·실제 지급금, 수익성 등을 고려한 예정기초율의 적정 수준,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영향도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재보험정책

① 개요

회사는 재보험관리전략(REMS)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ERC)에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재보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 부적격 재보험사에 대한 거래 제한

특히,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사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사에 대한 '안전도'와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재보험사 선정 기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5대 재보험사 편중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상위 5대 재보험사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102,281			
비 중	100.00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다.

주2)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대비 비중을 기재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 백만원, %)

구 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102,316				102,316
비 중	100.00				100.00

주1) 기타는 무등급, 부적격 재보험사를 포함하며 재보험사, 보험종목, 출재 경위 및 출재보험료 규모 등을 별도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VI. 위험관리

6-3. 일반손해보험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일반손해보험위험이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 하위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보험가격위험”은 미래 보험사고 발생의 시기, 빈도, 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준비금위험”은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절한 지급준비금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대재해위험”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보험위험액 현황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제외)]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I. 국내	100,175	30,296	-	-
1. 화재	5	1	-	-
2. 기술	4,278	1,680	-	-
3. 종합	11,529	4,836	-	-
4. 해상	24,513	13,318	-	-
5. 근재	1,570	374	-	-
6. 책임	36,144	7,796	-	-
7. 상해	19,849	1,675	-	-
8. 외국인상해	0	0	-	-
9. 농작물	0	0	-	-
10. 기타(일반)	2,289	616	-	-
11. 개인용자동차(인담보)	0	0	-	-
12. 개인용자동차(물담보)	0	0	-	-
13. 업무용자동차(인담보)	0	0	-	-
14. 업무용자동차(물담보)	0	0	-	-
15. 영업용자동차(인담보)	0	0	-	-
16. 영업용자동차(물담보)	0	0	-	-
17. 기타(자동차)	0	0	-	-
II. 유럽	0	0	-	-
III. 미국·캐나다	3	1	-	-
IV. 중국	10	3	-	-
V. 일본	0	0	-	-
VI. 기타 선진국	0	0	-	-
VII. 신흥국	4,545	3,053	-	-
VIII. 해외 기타	0	0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2) 국가별 위험액은 상관관계를 반영한 위험액을 기재

[준비금위험]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준비금 위험액	익스포저	준비금 위험액
I. 국내	79,064	25,639	-	-
1. 화재	0	0	-	-
2. 기술	4,505	1,052	-	-
3. 종합	3,385	776	-	-
4. 해상	12,017	4,772	-	-
5. 근재	714	278	-	-
6. 책임	51,786	17,871	-	-
7. 상해	6,618	872	-	-
8. 외국인상해	0	0	-	-
9. 농작물	0	0	-	-
10. 기타(일반)	40	18	-	-
11. 개인용자동차(인담보)	0	0	-	-
12. 개인용자동차(물담보)	0	0	-	-
13. 업무용자동차(인담보)	0	0	-	-
14. 업무용자동차(물담보)	0	0	-	-
15. 영업용자동차(인담보)	0	0	-	-
16. 영업용자동차(물담보)	0	0	-	-
17. 기타(자동차)	0	0	-	-
18. 신원보증	0	0	-	-
19. 법률보증	0	0	-	-
20. 이행보증	0	0	-	-
21. 금융보증	0	0	-	-
22. 소비자신용	0	0	-	-
23. 상업신용	0	0	-	-
II. 유럽	0	0	-	-
III. 미국·캐나다	0	0	-	-
IV. 중국	0	0	-	-
V. 일본	8	5	-	-
VI. 기타 선진국	0	0	-	-
VII. 신흥국	5,047	2,508	-	-
VIII. 해외 기타	0	0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주2) 국가별 위험액은 상관관계를 반영한 위험액을 기재

[대재해위험]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가. 자연재해위험액	54,361,547	78,401	-	-
I. 지진위험	54,361,547	65,234	-	-
II. 풍수해위험	54,361,547	43,489	-	-
III. 총계	54,361,547	78,401	-	-
나. 대형사고위험액	59,618,263	17,091	-	-
I. 대형사고재물위험	54,255,847	16,814	-	-
II. 대형사고상해위험	5,362,416	277	-	-
다. 대형보증위험액	0	0	-	-
라. 대재해위험액	113,979,810	80,242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분기마다 신뢰수준 99.5%의 기준 표준모형(지급여력제도)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제도에서는 ①보험가격위험, ②준비금위험, ③대재해위험3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하위위험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그 위험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 1회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한도 준수 여부, 예상·실제 지급금, 수익성 등을 고려한 예정기초율의 적정 수준,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영향도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가격설정(pricing)의 적정성

회사는 신상품 및 신위험 개발 시 계리/리스크관리/언더라이팅 부서간의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예정위험율 및 예정사업비율의 적정성분석, 손익분석 등 사전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① 지급준비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유지급준비금
일반	117,773
자동차	
합계	117,773

주1) PAP기준 일반손해보험 준비금 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

② 보험금진전추이

[일반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진전년도 \ 사고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17,277	24,948	25,728	26,316	26,415
당기(당반기)-3년	22,563	33,910	35,183	36,921	-
당기(당반기)-2년	27,973	47,179	51,341	-	-
당기(당반기)-1년	17,914	30,198	-	-	-
당기(당반기)	16,915	-	-	-	-

[자동차보험]

해 당 사 항 없 음

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

① 개요

회사는 재보험관리전략(REMS)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ERC)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재보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 부적격 재보험사에 대한 거래 제한

특히,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안전도'와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재보험자 선정 기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 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45,117			
비중	100.00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다.

주2)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대비 비중을 기재한다.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백만원, %)

구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51,327				51,327
비중	100.00				100.00

주1) 기타는 무등급, 부적격 재보험사를 포함하며 재보험사, 보험종목, 출재 경위 및 출재보험료 규모 등을 별도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VI. 위험관리

6-4. 시장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시장위험이란 시장변수(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의 변동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5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금리위험”은 금리기간구조의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주식위험”은 주가 및 주가의 변동성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부동산위험”은 부동산가격의 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외환위험”은 환율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 “자산집중위험”은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금리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2023.2Q)					
	총격 전	총격 후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금리경사
I. 자산총계	609,907	610,670	596,206	624,466	607,667	612,179
1. 직접보유	609,907	610,670	596,206	624,466	607,667	612,179
가. 현금 및 예치금	0	0	0	0	0	0
나. 주식	0	0	0	0	0	0
다. 채권	594,508	595,315	582,055	607,558	591,476	597,565
라. 대출채권	179	179	166	194	180	179
마. 부동산	0	0	0	0	0	0
바. 비이용자산	15,220	15,176	13,985	16,714	16,012	14,435
2. 간접투자						
가. 현금 및 예치금						
나. 주식						
다. 채권						
라. 대출채권						
마. 부동산						
바. 비이용자산						
II. 부채총계	-186,913	-188,597	-173,756	-201,083	-185,064	-188,807
1. 직접보유	-186,913	-188,597	-173,756	-201,083	-185,064	-188,807
가. 현행추정부채	-186,913	-188,597	-173,756	-201,083	-185,064	-188,807
나. 기타부채	0	0	0	0	0	0
2. 간접투자						
III. 순자산가치	796,821	799,267	769,962	825,550	792,731	800,985
IV. 금리 위험액	24,722,886					

③ 주식위험액 현황

- 해당사항없음

④ 부동산위험액 현황

- 해당사항없음

⑤ 외환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익스포저	환율 상승	환율 하락	가격변동 위험	외환위험액
당기 (23.2Q)	USD	13,199	0	4,488	0	4,488
	EUR	-1,799	612	0	0	
	CNY	-19	6	0	0	
	JPY	-39	13	0	0	
	기타 ^{주2)}	-2,030	482	0	0	
계		9,312	1,113	4,488	0	4,488
직전 반기 (22.4Q)	USD	-	-	-	-	
	EUR	-	-	-	-	
	CNY	-	-	-	-	
	JPY	-	-	-	-	
	기타 ^{주2)}	-	-	-	-	
계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⑥ 자산집중위험액 현황

- 해당사항없음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분기마다 신뢰수준 99.5% 기준 표준모형(지급여력제도)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지급여력에서는 시장위험을 ①금리위험, ②주식위험, ③부동산위험, ④외환위험, ⑤자산집중위험 5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하위위험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그 위험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방법

회사는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경과기간별 현금흐름 점검, 외부지표 변동에 따른 금리리스크량 및 외환리스크량 관리 및 손실 한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VI. 위험관리

6-5. 신용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신용위험이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신용위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2Q)		직전 반기 (2022.4Q)	
	익스포저	위험액	익스포저	위험액
I. 신용자산	1,119,793	5,023	-	-
(1)무위험	585,170	0	-	-
(2)공공부문	9,338	56	-	-
(3)일반기업	0	0	-	-
(4)유동화	0	0	-	-
(5)재유동화	0	0	-	-
(6)기타	114,144	2,707	-	-
(7)재보험관련	411,142	2,260	-	-
II. 담보부자산	0	0	-	-
(1)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0	0	-	-
(2)주택담보대출	0	0	-	-
(3)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0	0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매분기마다 신뢰수준 99.5% 기준 표준모형(지급여력제도)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지급여력에서는 신용위험이 내재된 모든 자산(간접투자 및 난외자산 포함)에 대해 각 자산의 신용등급별, 유효만기 현금흐름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② 관리방법

회사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경과기간별 현금흐름 점검, 외부지표 변동에 따른 금리리스크량 및 외환리스크량 관리 및 손실한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신용등급별 익스포저 현황

① 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합 계
당기 (23.2Q)	I. 무위험	585,170									585,170
	II. 공공부문	9,338									9,338
	III. 일반기업										
	IV. 유동화										
	V. 재유동화										
	VI. 기타										
	합 계	9,338									594,508
직전 반기 (22.4Q)	I. 무위험										-
	II. 공공부문	-	-	-	-	-	-	-	-	-	-
	III. 일반기업	-	-	-	-	-	-	-	-	-	-
	IV. 유동화	-	-	-	-	-	-	-	-	-	-
	V. 재유동화	-	-	-	-	-	-	-	-	-	-
	VI. 기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② 대출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합 계
당기 (23.2Q)	I. 무위험										
	II. 공공부문										
	III. 일반기업										
	IV. 유동화										
	V. 재유동화										
	VI. 기타								185		185
	합 계								185		185
직전 반기 (22.4Q)	I. 무위험										-
	II. 공공부문	-	-	-	-	-	-	-	-	-	-
	III. 일반기업	-	-	-	-	-	-	-	-	-	-
	IV. 유동화	-	-	-	-	-	-	-	-	-	-
	V. 재유동화	-	-	-	-	-	-	-	-	-	-
	VI. 기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합 계
당기 (23.2Q)	I. 생명·장기손해보험	-	-73,936								-73,936
	1. 출재보험료부채	-	-149,620								-149,620
	2. 출재준비금부채	-	75,685								75,685
	II. 일반손해보험	-	89,119								89,119
	1. 출재보험료부채	-	-15,409								-15,409
	2. 출재준비금부채	-	104,528								104,528
직전 반기 (22.4Q)	I. 생명·장기손해보험										
	1. 출재보험료부채	-	-	-	-	-	-	-	-	-	-
	2. 출재준비금부채	-	-	-	-	-	-	-	-	-	-
	II. 일반손해보험	-	-	-	-	-	-	-	-	-	-
	1. 출재보험료부채	-	-	-	-	-	-	-	-	-	-
	2. 출재준비금부채	-	-	-	-	-	-	-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손·생보사 공통사항)

VI. 위험관리

6-6. 유동성위험 관리

1) 개념 및 유동성갭 현황

① 개념

유동성위험은 지점이 자금의 조달, 운용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못한 자금의 유출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에 따른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② 유동성갭 현황 (단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3개월이하	3개월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초과 ~ 1년 이하	합 계
자 산 (A)	현금과 예치금	71,110	-	-	71,110
	유가증권	-	44,494	142,794	187,289
	대출채권	-	-	-	-
	기 타	-	-	-	-
	자산 계	71,110	44,494	142,794	258,399
부 채 (B)	해약환급금	4,913	5,060	15,545	25,518
	차입부채	-	-	-	-
	부채 계	4,913	5,060	15,545	25,518
유동성갭 (A-B)		66,197	39,435	127,249	232,881

주1)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 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

주2) 해약환급금은 감독규정 제7-66조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단 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

주3) 업무보고서[AH154/AI135](유동성비율)를 참조하되, 작성요령 4),6),8) 3개월 초과 분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

주4) 기타는 업무보고서[AH154/AI135](유동성비율)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비운용자산

주5) 단기차입금 등 차입부채는 차입금(당좌차월 포함), 사채, 상황이 예정된 상환우선주 발생금액 등을 기재

2) 인식 및 관리방법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단기 지급불능사태를 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동성비율을 모니터링하며 유동성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됩니다.

*유동성리스크비율 = 발생가능지급보험금/(유동성자산+보완유동성자산*30%)

VII. 기타 일반 현황

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해당사항 없음

Ⅶ. 기타 일반 현황

7-2. 재보험 관련 사항

1) 국내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기 (23.2Q)	직전 반기 (22.4Q)	반기대비 증감액	
국내	수재	수재보험료	421	414	7
		수재보험금	263	252	12
		수재보험수수료	82	96	(15)
		수재차액(A)	76	66	10
	출재	출재보험료	363	175	188
		출재보험금	299	182	118
		출재보험수수료	45	2	43
		출재차액(B)	(19)	9	(28)
순수지 차액 (A+B)		57	74	(18)	

* 주요변동요인 : 국내 재보험 순수지 차액은 전반기 대비 18억 감소하였으며, 이는 출재수지차액 28억 감소에 주로 기인합니다.

2)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기 (23.2Q)	직전 반기 (22.4Q)	반기대비 증감액	
국외	수재	수재보험료	85	18	66
		수재보험금	13	18	(5)
		수재보험수수료	10	2	8
		수재차액(A)	62	(1)	63
	출재	출재보험료	1,174	1,229	(56)
		출재보험금	401	508	(106)
		출재보험수수료	354	342	12
		출재차액(B)	(419)	(380)	(38)
순수지 차액 (A+B)		(357)	(382)	25	

* 주요변동요인 : 국외 재보험 순수지 차액은 전반기 대비 25억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재수지차액 63억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Ⅶ. 기타 일반 현황

7-3.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적립

(단위 : 억원)

구분	당분기 (23.2Q)	직전분기 (23.1Q)
이익잉여금	5,813	5,688
대손준비금	21	30
비상위험준비금	264	259
해약환급금준비금	4,314	4,308
보증준비금	-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22년까지 IFRS4/IAS39 기준, '23년부터 IFRS17/9 기준)

Ⅶ. 기타 일반 현황

7-4.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1) 2022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2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해당 없음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해당 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해당 없음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 없음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 없음
	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해당 없음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해당 없음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해당 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2) 2021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1년)
계량 지표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해당 없음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해당 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해당 없음
	4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 없음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 없음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해당 없음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해당 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1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3) 2020년 평가결과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2020년)
계량 항목	1	민원발생건수	양호
	2	민원처리노력	우수
	3	소송건수	보통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5	금융사고	우수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	보통
종합 등급			양호

주1) [평가근거]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2019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주4)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Ⅶ. 기타 일반 현황

7-5. 민원발생건수

※ 동 민원건수는 중복, 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 금감원 민원 中 자율조정성립건, B2B민원, 소송관련 민원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대상기간 : 당분기 2023년 2분기(2023. 4. 1.~2023. 6. 30.)

전분기 2023년 1분기(2023. 1. 1.~2023. 3. 31.)

1)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자체민원	6.00	5.00	(16.67)	0.28	0.24	(14.29)	
대외민원	33.00	34.00	3.03	1.55	1.61	3.87	
합계	39.00	39.00	0.00	1.83	1.84	0.55	

주1)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2)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2) 유형별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유형	보험모집	18.00	14.00	(22.22)	0.84	0.66	(21.43)	
	유지관리	5.00	5.00	0.00	0.23	0.24	4.35	
	보상(보험금)	15.00	16.00	6.67	0.70	0.76	8.57	
	기 타	1.00	4.00	300.00	0.05	0.19	280.00	
합계		39.00	39.00	0.00	1.83	1.84	0.55	

주)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3) 상품별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주3)}			환산건수 ^{주2)}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상품	일반보험	4.00	4.00	0.00	1.66	1.55	(6.63)	
	장기보장성보험	35.00	33.00	(5.71)	1.85	1.77	(4.32)	
	장기저축성보험	0	0	0	0	0	0	
	자동차보험	0	0	0	0	0	0	
기타 ^{주1)}		0	2.00	0.00	0.00	0	0	

주1) 해당회사의 내부경영(주가관리, RBC 등) 관련 민원, 모집수수료, 정비수가 등 소비자 외 모집인·정비업체 등이 제기하는 민원,

보험 가입전 상품 외 민원, 다수계약(가입상품 미한정) 가입자의 상품관련 외 민원 등

주2) 해당 분기말일 상품별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주3) 대출관련 민원 : 보험계약대출 관련 민원은 해당 상품 기준으로 구분하되, 담보·신용대출 관련 민원은 기타로 구분

※ '기타' 구분은 상품 외 민원으로 보유계약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건수'를 표기하지 않음

※ '기타' 구분의 환산건수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합계'를 표기하지 않으며, 상품별 '민원 건수'의 총합계(일반보험 + 장기보장성보험 + 장기저축성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는 '1.민원건수', '2.유형별 민원건수'의 각 '합계'와 일치

Ⅶ. 기타 일반 현황

7-6. 불안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및 유지율 현황

(단위 : 건. %)

구분	설계사	개인	법인대리점				직영	
		대리점	방카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복합 ⁸	다이렉트 ⁹
< 불안전판매비율¹ >								
불안전판매비율				0.10				
	불안전판매건수			356		-	-	-
	신계약건수			355,683		1,835	48	343
< 청약철회비율² >								
청약철회비율				16.83		1.47	0.00	14.29
	청약철회건수			59,850		27	-	49
	신계약건수			355,683		1,835	48	343

* 신계약건수 대상 기간 : 22.7.1~23.6.30

(단위 : 백만원, %)

구분	설계사	개인	법인대리점				직영	
		대리점	방카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복합 ⁸	다이렉트 ⁹
< 유지율³ >								
13회차				63.86	32.57	71.98	-	64.86
	유지계약액			66,575	196	724	-	40
	대상신계약액			104,251	602	1,006	-	62
25회차				50.20	42.30	19.57	-	59.37
	유지계약액			65,551	1,444	300	-	28
	대상신계약액			130,573	3,414	1,532	-	48
37회차				44.42	44.88	8.40	-	46.35
	유지계약액			64,459	2,387	300	-	69
	대상신계약액			145,122	5,319	3,575	-	148
61회차				41.07	49.55	36.37	-	38.27
	유지계약액			23,207	6,165	1,540	-	32,765
	대상신계약액			56,510	12,444	4,234	-	85,612

* 대상신계약액 대상 기간 : 산출월 기준 각 회차별 이전년도 동월 신계약액

유지계약액 대상 기간 : 22.7.1~23.6.30

1)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 100

2) (청약철회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3) (유지계약액 / 대상신계약액) × 100

4)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5)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 전문보험대리점

6)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7)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8)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9)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VII. 기타 일반 현황

7-7.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현황

1) 장기손해보험

(단위 : 건, %)

보험금 부지급률 ¹⁾		1.51	청구이후 해지비율 ²⁾		0.19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495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53
보험금 청구건수 ⁴⁾		32,830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28,497

※ 대상 기간 : 23.1.1~23.6.30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2)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 제외(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보험금 등)

3)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동일청구건에 지급과 부지급 공존시 지급으로 처리)

4)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5)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 계약자 임의해지 건 제외

6)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된 보험계약건(증권번호 기준, 중복 제외)

2) 자동차보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건, %)

구분	보험금 부지급률 ¹⁾	구분	보험금 불만족도 ²⁾
2022 하반기	/	2022 하반기	/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보험금 청구건수 ⁴⁾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업계평균		업계평균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2)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3) 보험금 청구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

4)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피해자, 피보험 소유주 및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한 건 중 보험금 지급/부지급 여부가 확정된 건수 (사고일자, 사고접수일자, 증권번호, 사고번호, 피해자(물) 및 피보험자 등 기준으로 산출)

* 피해서열별로 추산보험금을 책정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보험금 청구 포기건 및 피구상건 제외(다만, 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 진행중인건은 포함)

5)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중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을 해지한 건수 (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 다음의 경우는 해지건수에서 제외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지급건수(B)가 1건 이상 발생한 보험계약 건수(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중복 제외)

VII. 기타 일반 현황

7-8. 사회공헌활동

7-8-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구 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Q 누적	40.00	X	O	0	0	0	0	336	8	19,929

7-8-2. 분야별 주요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분 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 (집행) 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 공익	암 예방의 날 맞이 암환아 기부금 전달	20.0	-	-	-	-
문화, 예술, 스포츠	아동 양육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0	-	-	-	-
학술, 교육						
환경보호						
글로벌사회공헌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총 계		40.00	-	-	-	-

* 23년 2분기 누적실적 기준임

** 기부금액 관련 안내 :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제외

Ⅶ. 기타 일반 현황

7-9. 손해사정업무 처리현황

○ 기간 : '23.1.1 ~ '23.06.30

(단위 : 건, 천원, %)

회사명	위탁 업체명 주1)	종 구분	계약 기간	총 위탁건수 주2)	총 위탁 수수료	위탁비율(% 주3)	지급 수수료비율(% 주4)
에이스손해 보험	국제손해사정	4종	2023. 01. 01~2023. 12. 31	41,581	397,838	35.37	15.43
	다스카손해사정	4종	2023. 01. 01~2023. 12. 31	42,230	404,574	35.92	15.69
	시너지손해사정	4종	2023. 01. 01~2023. 12. 31	31,106	289,286	26.46	11.22
	에이원손해사정	1,4종	2023. 01. 01~2023. 12. 31	10	16,280	0.01	0.63
	아세아손해사정	1,4종	2023. 01. 01~2023. 12. 31	1,108	353,208	0.94	13.70
	다스카손해사정	4종	2023. 01. 01~2023. 12. 31	231	109,494	0.20	4.25
	해성손해사정	1,4종	2023. 01. 01~2023. 12. 31	177	96,294	0.15	3.73
	한바다손해사정	2종	2023. 01. 01~2023. 12. 31	40	52,594	0.03	2.04
	한일손해사정	2종	2023. 01. 01~2023. 12. 31	29	43,883	0.02	1.70
	한서손해사정	2종	2023. 01. 01~2023. 12. 31	3	2,886	0.00	0.11
	인코손해사정	1종	2023. 01. 01~2023. 12. 31	4	8,612	0.00	0.33
	진손해사정	1종	2022. 06. 01~2023. 05. 31	66	41,150	0.06	1.60
	코마손해사정	1종	2020. 01. 01~2020. 07. 31	1	1,788	0.00	0.07
	한리손해사정	2종	2023. 01. 01~2023. 12. 31	29	82,325	0.02	3.19
	고려손해사정	1종	2022. 06. 01~2023. 05. 31	33	20,492	0.03	0.79
	국제손해사정	4종	2023. 01. 01~2023. 12. 31	146	149,815	0.12	5.81
	맥클라렌손해사정	1종	2022. 09. 21~2023. 09. 20	12	37,410	0.01	1.45
	모던손해사정	2종	2022. 09. 01~2023. 09. 01	19	22,913	0.02	0.89
	새한손해사정	1종,2종	2023. 01. 01~2023. 12. 31	52	120,506	0.04	4.67
	파란손해사정	4종	2023. 02. 01~2024 01. 31	92	36,631	0.08	1.42
	SAS손해사정	1종	2022. 06. 01~2023. 05. 31	6	3,805	0.01	0.15
	세드릭(CLK)손해사정	1종	2023. 01. 01~2023. 12. 31	31	22,130	0.03	0.86
	세종손해사정	1종	2023. 01. 01~2023. 12. 31	50	36,948	0.04	1.43
	서울손해사정	1,4종	2023. 01. 01~2023. 12. 31	33	18,541	0.03	0.72
	티앤지손해사정	1종,4종	2023. 01. 01~2023. 12. 31	262	116,508	0.22	4.52
	탑손해사정	1종	2022. 01. 01~2022. 12. 31	68	38,054	0.06	1.48
TSA손해사정	4종	2022. 09. 01~2023. 09. 01	131	53,298	0.11	2.07	
콤사손해사정	2종	2023. 01. 26~2024. 01. 25	1	1,330	0.00	0.05	
	총계	-	-	117,551	2,578,594	100.00	100.00

주1) 위탁업체가 자회사인 경우 위탁업체명에 자회사임을 별도로 명기

주2) 업무위탁이 종결되어 수수료 지급 완료된 건 기준으로 작성

주3) 위탁비율 = 업체별 총 위탁 건수 / 전체 위탁건수

주4) 지급수수료 비율 = 업체별 총 수수료 지급액 / 전체 수수료 지급액

Ⅶ. 기타 일반 현황

7-10. 손해사정사 선임 등

1)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선임거부 건수 및 사유

○ 기간 : '23.01.01 ~ '23.06.30

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선임 거부 건수

(단위: 건)

구 분	연도(당해연도)		연도(전연도)	
	2023		2022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상반기	0	0	0	0
하반기				
연도 전체				

주1) 대상 : 보험금이 청구된 건 중 손해사정 대상 건

주2) 선임 요청 건수 :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를 표시한 건수

주3) 선임 거부 건수 :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동의 거부한 건수

2) 선임 동의 기준(2023년 08월 31일 현재)

<p>①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통보를 한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한다.</p> <p>가.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p> <p>나. 보험업법시행령제1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p> <p>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라.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 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보험사기 의심, 부당한 민원유발 등)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p> <p>마.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바. 기타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

Ⅷ. 재무제표

8-1. 재무상태표

(단위 : 원)

	당기(2023.2/4분기)		전기(2022)	
자산총계		1,121,013,994,012		1,024,692,885,264
현금및예치금	71,110,355,467		50,336,046,644	
금융자산	598,926,046,471		644,067,543,067	
유무형자산	33,640,094,011		36,683,735,245	
이연법인세자산	-		6,909,402,574	
보험계약자산	225,699,733,009		-	
재보험계약자산	189,704,642,991		-	
기타자산	1,933,122,063		286,696,157,734	
부채총계		551,341,551,559		782,451,334,725
보험계약부채	286,129,041,978		600,083,917,945	
재보험계약부채	104,831,943,612		-	
충당부채	935,209,086		919,170,182	
순확정급여부채	18,544,288,962		18,182,880,351	
당기법인세부채	5,385,821,372		22,993,953,674	
이연법인세부채	83,804,977,238		-	
기타부채	51,710,269,311		140,271,412,573	
자본총계		569,672,442,453		242,241,550,539
자본금	31,066,073,044		31,066,073,044	
기타불입자본	-		-	
신종자본증권	-		-	
자본조정	-		-	
기타자본구성요소	(42,716,653,388)		(23,031,509,2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17,944,687,534)		(23,031,509,209)	
- 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	(24,771,965,854)		-	
- 재평가잉여금 등			-	
이익잉여금	581,323,022,797		234,206,986,704	
부채와 자본 총계		1,121,013,994,012		1,024,692,885,264

주) K-IFRS기준 작성

VIII. 재무제표

8-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당기(2023.2/4분기)		전기(2022.2/4분기)	
I. 보험손익		21,198,378,635		49,186,709,835
1. 보험수익	311,452,677,393		302,313,084,742	
1-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수익	215,643,798,984		214,052,158,687	
1-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95,808,878,409		88,260,926,055	
2. 보험서비스비용	252,325,026,425		194,756,432,178	
2-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184,627,349,955		167,342,248,387	
2-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67,697,676,470		27,414,183,791	
3. 재보험수익	51,641,803,771		27,974,445,132	
3-1.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46,119,189,146		40,617,072,769	
3-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5,522,614,625		(12,642,627,637)	
4. 재보험서비스비용	83,032,337,726		80,476,423,171	
4-1.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47,023,790,233		51,971,242,649	
4-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비용	36,008,547,493		28,505,180,522	
5. 기타사업비용	6,538,738,378		5,867,964,690	
II. 투자손익		4,020,180,363		6,288,934,114
1. 투자수익	14,598,169,370		18,810,214,032	
2. 투자비용	10,577,989,007		12,521,279,918	
III. 영업외손익		96,685,053		(2,337,013,154)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5,315,244,051		53,138,630,795
V. 법인세비용		5,385,821,377		12,397,548,692
VI. 당기순이익		19,929,422,674		40,741,082,103
VII. 기타포괄손익		11,689,453,988		(54,893,715,929)
VIII. 분기총포괄손익		31,618,876,662		(14,152,633,826)

주) K-IFRS기준 작성

VIII. 재무제표

8-3.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및 영향분석

8-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지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관리프로세스와 회계처리시스템,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지점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 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¹⁾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²⁾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²⁾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재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 ¹⁾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²⁾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 ~ 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지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적 영향 평가 결과는 향후 지점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금융자산(파생상품 포함)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위:천원).

과목	제1039호에 따른 분류	제1109호에 따른 분류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예치금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50,336,047	50,336,047
대출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89,890	189,890
기타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4,234,035	4,230,184
매도가능금융자산 (채무증권)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586,136,719	586,136,719

(*) 대손충당금 및 기대신용손실 차감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금융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재무적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충당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단위:천원).

제1039호에 따른 분류	제1109호에 따른 분류	제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1)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1)	증감
대여금및수취채권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486,396	490,247	3,851
소계		486,396	490,247	3,851
손실충당금 합계		486,396	490,247	3,851

8-3-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지점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당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지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지점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점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관련 현금흐름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당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지점이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은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지점은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점은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 도입준비상황

지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점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지점은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지점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영향평가

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수치 변동

지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114,892,116천원, 576,838,550천원, 538,053,566천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68,095,758천원, 25,919,596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90,199,230천원 증가, 205,612,785천원 감소, 295,812,015천원 증가, 당기 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27,006,354천원 감소, 55,100,544천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와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제1104호(A)	계정과목	제1117호(B)	증감(B-A)
자산총계		1,024,692,886	자산총계	1,114,892,116	90,199,230
현금		50,336,047	현금	50,336,047	-
금융자산		644,067,543	금융자산	590,560,646	
유무형자산		36,683,735	유무형자산	36,683,735	
이연법인세자산		6,909,403	이연법인세자산	-	
보험계약자산		92,989,274	보험계약자산	240,379,045	
재보험계약자산		193,525,226	재보험계약자산	196,750,985	
기타자산		181,658	기타자산	181,658	
부채총계		782,451,335	부채총계	576,838,550	-205,612,785
보험계약부채		600,083,918	보험계약부채	288,436,892	
			재보험계약부채	105,754,438	
충당부채		919,170	충당부채	919,170	
순확정급여부채		18,182,880	순확정급여부채	18,182,880	
당기법인세부채		22,993,954	당기법인세부채	22,993,954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83,804,977	
기타부채		140,271,413	기타부채	56,746,239	
자본총계		242,241,551	자본총계	538,053,566	295,812,015
자본금		31,066,073	자본금	31,066,073	
기타자본구성요소		-23,031,509	기타자본구성요소	-54,406,107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3,031,5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3,031,509	
			- 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	-31,374,598	
이익잉여금		234,206,987	이익잉여금	561,393,600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1104호(A)	계정과목	제1117호(B)	증감(B-A)
영업수익		1,004,338,136	영업수익	746,141,517	-258,196,619
보험료수익		779,593,661	보험수익 및 보험금융수익	606,909,881	
재보험수익		212,920,086	출재보험수익 및 출재보험금융수익	127,407,247	
투자관련수익		11,824,389	투자관련수익	11,824,389	
영업비용		879,097,046	영업비용	655,510,231	-223,586,815
보험금비용		317,693,386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비용	468,471,403	
재보험비용		297,107,620	출재보험비용 및 출재보험금융비용	172,478,981	
지급경비 및 손해조사비		263,962,743	기타사업비용 및 재산관리비	12,781,967	
투자관련비용		333,297	투자관련비용	1,777,880	
영업손익		125,241,090	영업손익	90,631,286	-34,609,804
영업외수익		1,841,077	영업외수익	5,326,707	
영업외비용		1,957,387	영업외비용	6,820,808	
세전손익		125,124,780	세전손익	89,137,185	-35,987,595
법인세비용		30,022,668	법인세비용	21,041,427	
당기손익		95,102,112	당기손익	68,095,758	-27,006,354
기타포괄손익		-14,081,972	기타포괄손익	-42,176,162	-28,094,190
총포괄손익		81,020,140	총포괄손익	25,919,596	-55,100,544

<현금흐름표>

계정과목	제1104호(A)	제1117호(B)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150,191,396	150,191,396	0
투자활동 현금흐름	-173,205,947	-173,205,947	0
재무활동 현금흐름	-35,432,822	-35,432,822	0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지점은 전환일(2022년 1월 1일) 기준 보험계약집합의 발행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환방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평가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공정가치법	수정소급법	완전소급법
장기	2018년 이전 인수계약	-	2019년 이후 인수계약
일반	-	-	모든 계약

전환회계처리 관련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1일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566,586,123천원, 433,465,50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예상치)>

(단위: 천원)

전환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자산(A)		보험계약부채(B)		순보험계약부채(B-A)	
	총액	보험계약마진	총액	보험계약마진	총액	보험계약마진
완전소급법	408,224,295	-161,711,424	395,634,797	-10,723,863	-12,589,498	150,987,562
공정가치법	158,361,828	-52,900,811	37,830,712	1,188,431	-120,531,117	54,089,242
합계	566,586,123	-214,612,235	433,465,509	-9,535,431	-133,120,615	205,076,804

다)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지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부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437,130,031천원, 394,191,330천원으로 평가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부채의 구성(예상치)>

(단위: 천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부채				
	합계(A+B)	보험계약자산(A)		재보험계약자산(B)		합계(C+D)	보험계약부채(A)		재보험계약부채(B)	
		총액	보험계약마진	총액	보험계약마진		총액	보험계약마진	총액	보험계약마진
평가액	437,130,031	240,379,046	-173,169,377	196,750,985	-19,913,814	394,191,330	288,436,892	2,608,664	105,754,438	